
달천 상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 환경영향평가

-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 -

2021. 06.

목 차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1.2	계획의 개요	2
1.3	계획기본계획의 내용	4
1.4	계획의 추진경위	8
1.5	기대효과	8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9
2.1	평가항목의 설정	10
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12
2.3	대안의 설정	16
2.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20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22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23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달천 상류권역(상류구간)
하천 기본 계획(변경)
전략 환경영향평가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2 계획의 개요

1.3 계획기본계획의 내용

1.4 계획의 추진경위

1.5 기대효과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본 계획은 달천 외 5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계획범위 내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함

1.2 계획의 개요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청주시, 보은군 일대 지방하천 6개소(달천, 흑천, 감천, 인경천, 미원천, 중리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개발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 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계획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기본계획 수립(지방하천 6개소, 총 연장 93.6km) 달천 : 45.75km, 흑천 : 7.63 km, 감천 : 18.35km, 인경천 : 6.24 km, 미원천 : 11.65 km, 중리천 : 3.98 km 	

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해야 함

〈표 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및 구성방법

구 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및 구성방법
실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구성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대상 기본개발계획을 입안 또는 수립하는 관계행정기관
구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행정계획 관계 전문가(환경단체 포함), 협의기관 공무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 주민대표·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1.3 계획기본계획의 내용

1.3.1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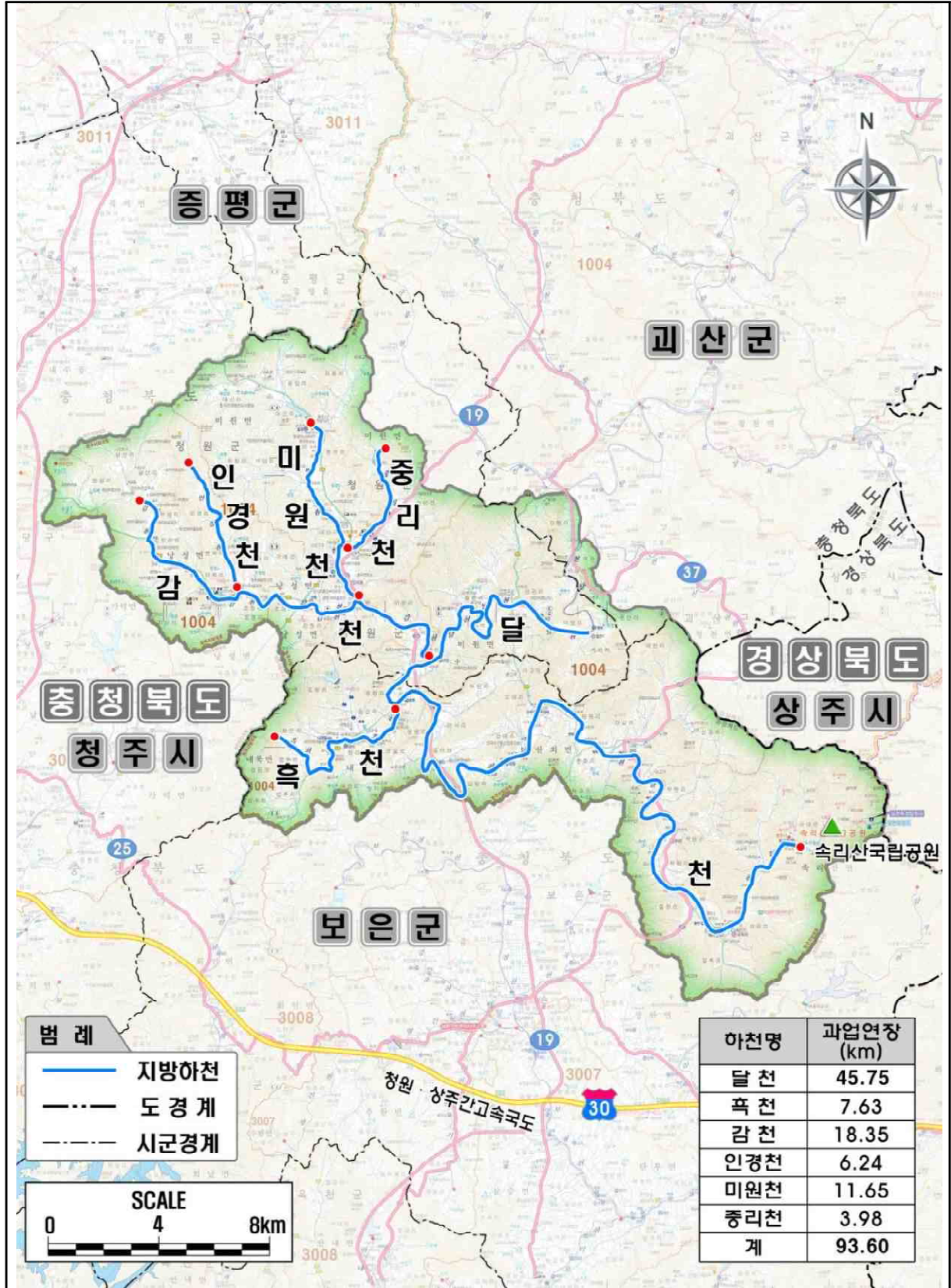
- 계획명 : 달천 상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산외면, 내북면, 청주시 낭성면, 미원면 일원
- 연 장 : 충청북도 관내 6개 지방하천, 총 연장 93.6km

계 획 하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방하천 6개소, 총 연장 93.6km) - 달천 : 45.75km, 흑천 : 7.63km, 감천 : 18.35km, 인경천 : 6.24km, 미원천 : 11.65km, 중리천 : 3.98km
---------	--

- 계획수립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표 1-3〉 계획범위

하천명	하천등급	계획구간		수립연장 (km)
		시 점	종 점	
달 천	지방하천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충북 청주시 미원면(계원천(소) 합류)	45.75
흑 천	지방하천	충북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	충북 보은군 내북면(달천 합류)	7.63
감 천	지방하천	충북 청주시 낭성면 무성리	충북 청주시 미원면(달천 합류)	18.35
인경천	지방하천	충북 청주시 낭성면 인경리	충북 청주시 낭성면(감천 합류)	6.24
미원천	지방하천	충북 청주시 낭성면 대신리	충북 청주시 미원면(감천 합류)	11.65
중리천	지방하천	충북 청주 미원면 중리	충북 청주시 미원면(미원천 합류)	3.98
계		지방하천 6개소		93.60



(그림 1-1) 계획하천 위치도



(그림 1-3) 계획하천 현황사진

1.4 계획의 추진경위

1.4.1 추진경위

- 2020. 11~12. :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 2021. 01~04. :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현황조사
- 2021. 05~06. : 평가준비서 심의 및 심의 의견 취합

1.4.2 향후 추진계획(안)

- 2021. 06~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제출 및 관계기관·주민의견 수렴
- 2021. 10~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제출 및 협의요청
- 2022. 01~02. :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작성

1.5 기대효과

- 하천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을 조성
- 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보전계획 및 계획하천의 수리·수문 특성변화와 하천 관리운영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 하천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극대화를 위한 이·치수, 환경측면 등을 고려한 하천관리 기본방향 수립
- 주변 하천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의 개선을 도모
- 하천변과 유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 및 자연보전, 친수기능을 고려한 공간기능 설정으로 지역주민 생활 개선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
-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 조성

달천 상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평가항목의 설정

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2.3 대안의 설정

2.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평가항목의 설정

○ 계획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1개 항목을 환경현황 조사항목으로 나머지 10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표 2-1〉 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산정결과

구 분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고
1.계획의 적정성	가)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의 연계성	-	○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 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	-
	나)대안 설정· 분석의 적정성	-	○ 계획수립, 하천정비,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2.입지의 타당성	가)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의 서식지 및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 계획시행시 지형변화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지형·지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	경 관
		수환경의 보전	○ 공사시 부유토사, 운영시 비점오염원 발생 및 저감방안 수립 ○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치수 안전성 부합여부 검토	수 질 수리·수문
	나)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 건설장비 가동 및 절·성토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방안 검토	대기질
			○ 건설장비 가동, 차량운행시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소음·진동
		환경기초시설 의 적정성	○ 계획시행시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현황 및 영향여부 검토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검토	친환경적 자원순환
	다)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하천시설물 설치 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 ○ 공간환경관리계획	토지이용

〈표 2-2〉 일반검토 항목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 사유
현황조사 항목(1개)	기 상	○ 계획하천 인근 기상현황 조사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표 2-3〉 제외 항목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 사유
제외 항목 (10개)	온 실 가 스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미미
	토 양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 영향은 미미
	인 구 · 주 거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약
	악 취	○ 악취발생 요인 없음
	해 양 환 경	○ 계획의 특성상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약
	전 파 장 해	○ 전파장해 요인 없음
	일 조 장 해	○ 계획하천 인근에 일조에 영향이 되는 구조물 등은 없음
	위 생 · 공 중 보 건	○ 위생 · 공중보건상 문제는 미약
	위 락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약
	산 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약

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2.2.1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 본 계획의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계획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 보전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측할 계획임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2-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①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동 · 식 물 상 ①조사내용 : 식물상 및 식생, 육상동물상 현황, 육수동물상 현황,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계획하천 주변 약 100~500m)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총 2회, 조류 동계조사 실시)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에 대한 영향검토 ○ 분류군별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검토 ○ 하천점유, 토사유출에 따른 담수 생물상 영향 검토
	자연 환경 자 산	①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총 2회, 조류 동계 조사실시)	○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 형 · 지 질 ①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지형분석, 특이 지형 및 지질노두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생태축)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검토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훼손 여부 검토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①조사내용 : 경관 우수지역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을 선정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표 2-4〉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②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환경의 보전	수질의 보전	①조사내용 : 하천에 대한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농도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하천수질 3회, 하천저질 1회 조사)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수질오염총량 관련 검토
	수리·수문	①조사내용 : 하천의 수리·수문 여건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 여건 변화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기상	①조사내용 : 계획하천 인근 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정리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인근지역 ③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 조사	○기상연보 분석·정리
	대기질	①조사내용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원 및 대기오염도 현황, 정온시설 분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계획하천 주변 약 300m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자동측정망 등)	○공사시 발생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발생량 산정, 영향예측 시행
	소음·진동	①조사내용 : 주변 소음현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정온시설 분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계획하천 주변 약 300m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자동측정망 등)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예측
	환경적 자원 순환성	①조사내용 : 폐기물,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이 위치한 행정구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공종별, 종류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①조사내용 : 토지이용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검토

2.2.2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

가. 환경질 측정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환경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계획을 수립하였음

- 측정지점
 - 하천수질, 하천저질 : 계획하천별 3km당 1지점(총 31개 지점)
- 측정횟수
 - 하천수질 : 총 3회 조사
 - 하천저질 : 총 1회 조사

〈표 2-5〉 환경질 조사계획

구 분	측정횟수	조 사 항 목
하천수질	총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 BOD, COD, DO, SS, TOC, T-N, T-P, 카드뮴(Cd), 시안(CN), 수은(Hg), 비소(As), 유기인, 납(Pb), 6가크롬(Cr⁶⁺), ABS,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총대장균군,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수온, 유량, 사업화탄소 등 22개 항목
하천저질	총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도분포, 강열감량(IL), T-N, T-P, COD, Cd, Cu, As, Hg, Pb, Cr⁶⁺, Ni, Zn 등 13개 항목

주) 상기 조사계획은 기본계획수립 일정 및 관계기관 검토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동·식물상 조사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 조사횟수 : 총 2회 실시, 겨울철 조류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식물상,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표 2-6〉 동·식물상 조사계획

구분	조사시기	조사내용	비고
식물상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0월) 중 총 2회	◦관속식물상,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생태계교란식물 ◦산림청 희귀식물, 천연기념물, 보호수, 노거수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	-
식생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0월) 중 총 2회	◦현존식생 현황 파악, 현존식생도를 작성	-
포유류	◦연중(1~12월) 중 총 2회	◦포유동물상,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생태계교란종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	-
조류	◦봄(3~5월), 여름(6~9월), 가을(10~11월), 겨울(12~2월) 중 총 2회	◦조류상,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집단번식지,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등 ◦법정보호종(번식 또는 지속적인 서식유무)	-
양서·파충류	◦봄(2~5월), 여름(6~8월), 가을(9~10월) 중 총 2회	◦양서·파충류,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	-
육상곤충	◦4월 중순~10월 중순 중 총 2회	◦육상곤충상,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	-
어류	◦4~6월, 9~10월 중 총 2회	◦어류상(서식종, 개체수, 상대풍부도, 우점종/아우점종, 출현시기, 출현지점 등), 군집분석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	-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4~5월, 9~10월 중 총 2회	◦담수무척추동물상(서식종, 개체수, 상대풍부도, 우점종/아우점종, 출현시기, 출현지점 등), 군집분석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	-

주) 상기 조사계획은 기본계획수립 일정 및 관계기관 검토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3 대안의 설정

2.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본 사업은 하천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충청북도 관내 달천, 흑천, 감천, 인경천, 미월천, 중리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검토함

〈표 2-7〉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action)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2.3.2 대안의 미선정 사유

-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검토할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및 수단·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등의 미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표 2-8〉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선정여부	미선정 사유
수요·공급	미선정	○ 하천기본계획은 이·치수 계획 및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등 행정계획으로 “수요·공급”의 대안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입지	미선정	○ 하천기본계획은 기 조성된 하천구역내에서 이·치수,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재해위험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재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으로 “입지”에 대한 대안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시기·순서	미선정	○ 하천기본계획 검토 후 홍수 등 재해위험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하천정비를 실시할 계획임
기타	미선정	○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없음

2.3.3 대안의 설정

가. 계획비교

-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9〉 대안검토(행정계획 수립 및 행정계획 미수립)

구분	대안 1 (Action)	대안 2 (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 계획시행 후 하천점용허가 재검토 등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효율성저하(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수자원 이용측면	○ 수자원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 계획되지 않는 하천계획으로 비효율적인 수자원이용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보호구역 고려한 계획수립,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 등으로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태계훼손 가능성	○ 공사에 따라 일부 생태계 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 생태자연도 Ⅲ등급 지역	○ 생태계변화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의 훼손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 계획의 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지역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됨	○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의 침수 등이 예상됨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현상태가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환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공사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나, 주변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으로 경관상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하천의 공사에 따라 일시적으로 환경기준을 상회할 수 있으나, 공사시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을 통하여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계획하천의 입지적 특성상 양호한 하천조경을 형성하고 있어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대안선정	○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홍수피해 예방 및 감소, 수자원 확보 및 하천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하천환경 개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기여를 위하여 하천정비를 시행(Action)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선정안	○	

2.3.4 수단·방법

- 본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의 특성상 홍수방어능력(이·치수 능력)의 향상 및 수질개선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이 계획하천의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질보전 및 양호한 하천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표 2-10〉 대안의 선정(이·치수 능력 향상을 위한 대안)

대안	1안 (하천정비)	2안 (홍수조절지 조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주변지역은 대체로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의 교량, 제방, 보 및 낙차공 등의 구조물 정비가 필요함 ○ 홍수조절 능력 및 하천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계획이 필요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호안의 정비로 홍수에 대비함 ○ 하천 내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하천수의 이용을 도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시 발생하는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홍수조절지를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홍수에 대비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편입면적이 거의 없어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주변지역의 생태적 여건의 변화가 적음 ○ 종합적인 하천정비로 홍수에 대비함과 동시에 하천수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편입면적이 필요함 ○ 유지관리가 필요함 ○ 홍수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
대안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주변 여건 및 하천현황을 파악하여 개발 면적을 최소화 하고 생태적 환경변화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함 ○ 홍수조절지 등의 추가개발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며, 농경지 편입 등에 의한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안과 같은 홍수저감대책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안의 경우 기존 하천시설물의 보강으로 하천의 이·치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며,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이·치수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1안으로 선정함 	
선정안	○	-

〈표 2-10〉 대안의 선정(이·치수 능력 향상을 위한 대안)

대안	1안 (친환경적 호안조성)	2안 (직접정화처리시설 설치)	3안 (하천변 인공습지 설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주변지역은 대체로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의 교량, 제방, 보 및 낙차공 등의 구조물 정비가 필요함 ○ 홍수조절 능력 및 하천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계획이 필요함 ○ 일부 취락지역의 경우 생활하수 및 축사시설 등으로 인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장래 양호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요구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의 보강(호안 조성 등)으로 재해에 대한 대비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변에 하천 직접정화 처리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변 인공습지 설치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생태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자연정화 능력 향상 ○ 수질개선과 동시에 생물 서식 공간 제공 ○ 추가 편입면적이 거의 없고 생태적 여건의 변화가 적음 ○ 경관상 양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수의 직접정화를 통한 가시적인 수질향상 효과 ○ 추가 편입면적이 필요함 ○ 시설관리·운영비 소요 ○ 주로 하수도정비 및 배출수 규제에 의해서도 충분한 개선효과를 얻지 못하는 지역에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자정능력을 최대한 활용 ○ 수질개선과 동시에 생물 서식 공간 제공 ○ 체류시간이 필요하므로 대안1, 2와 비교시 편입면적이 가장 큼 ○ 추가토지매입 필요 ○ 시설관리·운영비 소요
대안선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대부분의 하천 주변지역은 농경지, 주거지역 및 산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리적 조건, 생태계 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함 ○ 계획하천 주변지역의 경우 주 오염원은 농경지 및 취락지역으로 오염원이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양호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하천의 자정능력이 높은 편이며,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의 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안 및 3안과 같은 수질개선대책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안의 경우 기존 하천시설물을 보강, 수변 식생대를 그대로 조성하고 친환경적 호안을 조성하여 자연정화능력을 향상시키고 하천생태환경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며, 안정적인 수질개선 및 양호한 생태환경 조성이 가능한 1안으로 선정함 		
	○	-	-

2.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2.4.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주시 및 보은군 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및 의견수렴

2.4.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 본 계획의 주관 행정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고 실시

2.4.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주관 행정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공람장소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계획하천이 위치한 관할 시·군 및 주민센터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요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임

2.4.4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지방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신문에 계획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회는 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하고, 설명회 장소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개최요구가 있고, 개최요구에 대한 법적요건이 충분할 경우에 개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달천 상류권역(상류구간)
하천 기본 계획(변경)
전략 환경영향평가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3.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3.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내용

- 심의기간 : 2021년 05월 11일 ~ 2021년 06월 01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 협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0명

〈표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여위원

구분	소속 / 부서		직위(직급)	성명	비고
위원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국장	이 * *	-
위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과장	윤 * *	-
	금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		주무관	김 * *	-
	충북대학교(환경공학과)		교수	정 * *	-
	민간전문가(충남연구원)		부실장	오 * *	-
	지방 자치 단체	청주시청(환경정책과)	과장	박 * *	-
		보은군청(환경위생과)	과장	박 * *	-
	청주시 주민대표(어암2리)		이장	윤 * *	-
	보은군 주민대표(속리산면 이장협의회)		회장	최 * *	-
	시민단체(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 * *	-

저장 : 신현태 / 하천계획과 (2021-05-07 14:34:57)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협의회 개최 알림(달천 상류권역(상류·하류구간) 하천기본계획)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달천 상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달천 상류권역(하류구간)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평가준비서에 대하여 검토 후 심의 결과 통보서(붙임양식)를 '21.06.0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개요 】

- 가. 건 명 : 달천 상류권역(상류·하류구간) 하천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 나. 인 원 : 위원장 등 14명
- 다. 일 정 : 2021. 05. 11. ~ 2021. 06. 01.
 - 평가준비서 배포 및 사전설명은 해당 용역을 수행중인 용역사에서 방문 설명
- 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마. 심의안건 : 달천 상류권역(상류·하류구간)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준비서 심의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계획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각 1부(별송), 끝.

문서관리카드 2-1

저장 : 신현태 / 하천계획과 (2021-05-07 14:34:57)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신자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 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환경정책과장), 보은군수(환경위생과장), 괴산군수(환경과장), 충북대학교 정세웅 위원님 귀하, 충남연구원 오혜정 위원님 귀하, KETI 환경평가본부 박종문 위원님 귀하, 청주시 주민대표 윤종근 위원님 귀하, 보은군 주민대표 최재익 위원님 귀하, 괴산군 주민대표 안도영 위원님 귀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위원님 귀하

주무관 사무관대우 하천계획과장 하천국장 전결

협조자

시행 접수

우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 <http://www.molit.go.kr/wrocm>

전화번호 033-769-5684 팩스번호 033-742-0772 / tlsgusxo14@molit.go.kr / 비공개(6)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문서관리카드 2-2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3.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달천 상류권역(상류·하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의견

- 계획하천의 이·치수 계획뿐만 아니라 수질 및 생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지침(환경영향평가 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하천의 계획규모를 바탕으로 항목별 영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임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자연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환경친화적인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부합성, 환경·생태적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조사(문헌, 현지, 탐문 등)는 계획하천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하천 주변지역 동·식물의 출현 및 생육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조사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5. 기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지역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 사진 등을 활용하고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함

2021. 6. .

심의위원 윤

3.2.2 금강유역환경청

붙임

심의결과 통보서(양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달천 상류권역(상·하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 의견

- 하천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치수 기능 외에도 환경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의 수요와 하천 현황(홍수량 분석 등 포함), 관리목표 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 설정, 대안(수요, 방법 등)을 비교하여 개수계획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제방 및 하천 시설물 계획의 타당성 검토, 대안별(계획대안, 수단·방법대안, 수요·공급대안 등) 장·단점 및 기대효과 평가, 대안의 선정사유 명확히 제시
 - 시설물 현황, 공간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지구 지정의 대안 설정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의 시행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 관련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수변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 구역 등)이나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생태자연도, 식생 등) 등 하천 주변으로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의 존재 여부 확인, 그러한 지역은 조사·예측범위 확대
 - 하천 상·하류 및 주변에 위치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분포 확인, 개발사업이 상수원 및 하천 수질 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로 환경적 측면을 비교·제시하여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획 수립 규모, 추진 시기, 환경적 목표와 기준 등 계획수립 관련 대안
 -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등 치수목표 설정 관련 대안(관련규정, 본 하천의 특성, 타 하천 사례 등)

- 계획구간별로 하폭확대, 제방정비, 하도정비, 홍수조절지 등 구조물적 대책과 홍수터 관리 등 비구조물적 대책을 포함하여 하천의 이·치수능력 조절 대안의 환경적 특성 비교
- 제방 및 횡적시설물 설치, 하도정비, 유로변경 등 각종 개수계획에 대한 불가피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타당성 확보, 불필요한 개발 지양
- 구조물 공법의 환경적 기능과 재해예방적 기능을 객관적(수치적)으로 비교, 철거·재설치(보강)·신설 등 대안을 검토하여 실시설계 시 구간별 환경적,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제시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하천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제시 하고, 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전·보호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전반적인 하천 및 주변 현황을 도면(실측도·항공사진 등)에 표기,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자료(해상도, 색채, 크기 등)로 제시
 - 조사 항목은 수질, 대기 등 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해 실시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를 참조하여 동·식물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계획 하천 및 주변 지역 조사
 -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계획 등을 항목별로 정량적 제시
 - 수질 조사는 하천 상·하류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선정, 수질오염원 분포, 관리현황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한 수질관리 대책 제시
 - 대기질 및 소음·진동은 주거 밀집지 등 사업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지점 선정, 사업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계획구간의 기상자료 분석을 통해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 영향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지구의 경관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근·중·원경별로 가시권 분석, 충분한 수의 조망점 선정, 주요 경관 변화지점 및 각 시설별 경관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
- 환경영향평가서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헌 등은 객관성이 확보 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 지역 주민들이 공람·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공람 및 설명회와 관련하여 현수막 설치, 문자발송 등 다각적 안내
 - 공람장소는 대상지역 내 모든 읍·면사무소 등을 포함
 -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 수치, 조사결과 등을 순화한 평가 요약서(사진, 그림, 수치비교 등)를 작성·제공

5.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기수립 기본계획, 주변 하천의 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계획들과 의사결정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연계성 및 부합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획 하천과 관련하여 최근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종합계획 반영 여부 제시, 금회 치수계획의 필요성(재해 위험성, 홍수방어 수단·방법 및 규모)을 비교하여 불필요한 계획 지양
-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 생태계 특성, 수질 및 수리생태적 특성, 관리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하천 공간관리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2021. 5. .

심의위원 김)

3.2.3 민간전문가(충북대학교)

붙임

심의결과 통보서(양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달천 상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 의견

- 이치수 능력향상과 수질개선을 위한 대안의 설정에 대한 근거가 취약하며, 최근 하천 통합관리 정책 방향인 Nature Based Solutions에 부합하지 않음
- 하천 수질조사에 강우시 조사 추가 필요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대안 설정에서 하천정비와 친환경 호안조성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최근 하천관리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음. 최근 하천의 홍수조절과 수질관리 통합관리를 위해 기존의 Grey Based Solution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에서 Nature Based Solution을 지향하는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하천수질조사 부문에 강우시 조사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5.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없음

2021. 06. 02.

심의위원 정



3.2.4 민간전문가(충남연구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달천 상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분한 환경현황분석, 예측, 저감방안 검토를 통하여 본 계획 내 사업이 실현되었을 경우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는 지속가능한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히, 환경·생태 민감지역 및 중요지역의 경우 대안 적극 검토 필요)
- 각종 국가 상위계획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청주시, 보은군) 내에서 최근 수립된 다양한 환경, 생태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평가준비서는 달천 상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하는 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대부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달천과 흑천의 경우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호서정맥 등 주요 생태축의 완충구역 연결지역에 해당하므로, 달천 및 흑천의 하천축으로서의 역할 강화 뿐만 아니라 주변 산림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서식지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이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방안 강구가 필요함. 따라서 지형 및 생태축 항목의 경우 대상지역을 계획 하천 및 주변 지역(생태축)을 대상지역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높은 지역의 경우 향후 하천정비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대안 설정 및 대안의 비교·분석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생태계 훼손 가능성 부분은 일시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호안공법 설정에 따라 횡적 연결성 부분에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부문별 환경질조사(현장조사)의 경우 각 조사 분야에 따라 조사지점, 조사 시기(계절), 횟수, 항목 등의 적절한 선정에 따라 평가의 질이 결정될 수 있음. 본 준비서의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매우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음. 다만 조사시기(계절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동·식물상 조사의 경우 분류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출현을 많이 하는 시기에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예_조류 : 겨울철새 반드시 포함하여 2회를 제시한 것처럼 포유류 : 늦가을 또는 이른 봄, 어류 : 산란 시기 등 조사시기 설정 필요)
 - 지표수질의 경우 2회 측정을 갈수기, 평수기를 포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유량은 가능한 경우 수질 및 유량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추가하여 검토(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중요 하천만 선정하여 표본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문헌조사 국가측정망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및 지자체 측정망 및 자체 측정자료를 수집하여 일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의 보전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하천 지자체의 멸종위기종 분포, 야생동·식물 서식현황(청주시 비오름 지도 등 참고), 비오름 등급현황, 국가 및 중요 생태축을 고려한 해당 하천 유역의 산림생태축 및 하천생태축 현황,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 및 문헌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향후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별도 의견 없음

5. 기타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부분의 검토 및 지속가능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충청북도 및 해당 지자체에서 최근 수립한 환경보전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야생동·식물보호실천계획, 습지보전계획, 토양보전계획 등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내 제시된 환경적, 생태적, 경관적 중요지역 및 자원에 대한 보전 및

환경영향 최소화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상기 검토의견과 같이, 중점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2021. 6. .

심의위원 오



3.2.5 청주시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달천 상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 의견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과 이차수적인 측면이 조화되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견을 반영 할 것

□ 심 의 의 건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할 것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법정 보호종 서식지를 파악하고 공사중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할 것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해당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및 정비공사 시행 현황등을 조사하여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 할 것
 - 해당 하천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발을 최소화 하고 자연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고,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할 것.
5. 기 타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으로, 삭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 계획의 승인·허가 전까지 수질오염총량 관련 협의를 하여야 함

2021. 5. 27.

심의위원 박



3.2.6 보은군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달천 상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 의견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천의 생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공사 시 대기,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구간 주변에 위치한 주거 밀집지역 등 정온시설을 조사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홍수발생 및 강우량 등을 조사하여 강우로 인한 인근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사업구간 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 시 동식물서식지에 대한 훼손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을 통해 사업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사업계획지역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지역개발 부하량을 보은군(환경위생과)로부터 할당받아야 함.

2021. 5. .

심의위원 박 1)

3.2.7 청주시 주민대표

붙임	심의결과 통보서(양식)
<p>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달천 상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p style="padding-left: 20px;">○ 검토 결과 문제없으며 하천 인근 지역주민들의 수해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계획 요망</p> <p><input type="checkbox"/> 심의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적정하게 설정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준설을 통한 단계적인 하천의 깊이 조절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항목, 범위, 방법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나 단정 짓지않고 좀 더 좋은 방안을 모색 요망(위원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소통 바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수렴계획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경청바람 5.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류와 하류의 상황에 맞는 차이에 대한 소통과 노력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21. 6. 2.</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심의위원 윤 </p>	
- 1 -	

3.2.8 보은군 주민대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달천 상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 의견

○ 계획구간 내 달천은 자연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등이 분포되어 있고 천연기념물인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자연상태(자연식 등)를 최대한 활용한 서식지 보존 등 생태계 및 관광자원 보전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절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홍수발생 시 제방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지천 합류지점은 하천폭 및 강우량 등을 조사하고 토사 적체 지역은 준설 등을 검토하기 바람.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공사 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가 시행되어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5.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없음

2021. 5. .

심의위원 최 (인)

3.2.9 시민단체

- 별도 의견없음